

Youth Hero상(자랑스러운 청소년대상) 운영규정

(제1차 개정 2023. 12. 1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Youth Hero(자랑스러운 청소년대상)' 수상자 선발과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중앙본부에 'Youth Hero(자랑스러운 청소년대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 조성)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출연금
2. 성금
3. 결산 잉여금
4. 기타

제3조(위원회 설치 및 행정사무 지원) ①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하되 본 연맹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위원장 1인
2. 부위원장 1인
3. 위 원 5명 이상
4. 감 사 1인
5. 간 사 1인

② 위원회 운영과 기금 관리 등의 행정사무는 사무총국에서 실시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년 2회 정기회의를 소집하여 당해 연도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수상자를 선발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심의 처리하고 본 연맹 이사회 및 전국총회에 보고한다.

1. 위원회의 사업계획과 사업보고 및 감사 보고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 증액에 관한 사항.
4. 수상자 선발 및 수여에 관한 사항.
5. 기금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제5조(기금의 관리) 기금의 관리는 중앙본부 별도 계정을 설치·운영 관리하며 그 과실로서 운영한다.

제6조(수상 후보자) 수상자는 다음 분야의 후보자 중에서 선발한다.

1. 학술부문 (개정 23. 12. 18.)
인문·과학부문에서 탁월한 실적을 거두었거나 미래를 선도할만한 발전가능성을 보인 청소년
2. 체육부문 (개정 23. 12. 18.)
체육부문에서 탁월한 실적을 거두었거나 미래 성장 가능성을 지닌 청소년
3. 문화·예술부문 (개정 23. 12. 18.)
문화·예술부문에서 탁월한 실적을 거두었거나 미래 성장 가능성을 지닌 청소년
4. 사회봉사·진로개척부문 (개정 23. 12. 18.)
 - 가. 사회봉사
따뜻한 인간미를 바탕으로 봉사·희생정신을 발휘한 청소년
 - 나. 진로개척
자신의 진로를 진취적으로 개척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된 청소년
5. 스카우트부문 (개정 23. 12. 18.)
스카우트 정신이 바탕이 되어 각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통해 스카우트의 위상을 높인 스카우트 대원(3년 이상 등록)
6. 특별부문 (개정 23. 12. 18.)
특별한 분야에서 인성과 활동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된 청소년

제7조(자격기준 및 인원 선정) 제6조에서 정한 각 부문에 대한 수상 후보자의 구체적인 자격기준과 인원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8조(추천 절차) ① 수상자는 각급 학교 및 법인·단체의 장, 국·내외 스카우트 조직체의 장, 개인 등으로부터 후보 추천을 받아 위원회에서 선발한다.

② 사무총장은 후보자를 3배수 내로 1차 선정한 후 다음 서류를 구비한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부
2. 공적조서 1부
3. 반명함판 사진 1매

제9조(포상) ① 수상자에게는 메달·증서 및 상금을 지급한다.

② 메달의 규격과 상금액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0조(포상의 시기) 포상은 매년 창립기념의 달에 실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별도로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Youth Hero상(자랑스러운 청소년대상) 운영 규정)

1. 이 규정은 2006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23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